



보도 일시	2022. 9. 4.(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9. 2.(금)
담당 부서 <총괄>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421)
		담당자	주무관 강명주 (044-201-7428)

## 추석 연휴 전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 연휴기간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 수립, 수거 상황 집중 관리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나는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및 음식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 폐기물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제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① 생활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 연휴 기간 △민간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신속한 수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중에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9월 12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

-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 폐기물이 과다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보관장을 마련하며, 선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 한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연휴 기간 전후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 연휴 기간 폐지 발생량이 급증하여 제지 제조사 등의 보관용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전국 4개 공공비축시설을 폐지 긴급 보관시설로 지원할 계획이다.

### <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 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에 대한 취약 시간대 순찰 등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자가 사용한 마스크를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도록 안내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체 등의 추석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 < ④ 분리배출 홍보 >

- 추석 연휴에 많이 발생하는 과일 포장재, 택배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카드뉴스 등으로 홍보하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앱\*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애플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음

- 또한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진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 중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및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를 홍보하여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인천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투명페트병 반납시 포인트·상품 등을 제공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 “지자체별로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2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끝.

담당 부서 <총괄>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421)
		담당자	주무관	강명주 (044-201-7428)
<과대표장 점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044-201-7354)
<수도권 매립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7400)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7407)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7400)
		담당자	사무관	김종민 (044-201-7410)



**1 추진배경**

- 추석 연휴를 맞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로 인해 수거 지연 및 불법투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수립·시행
  -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지자체별로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거 방법 등을 조정하거나,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 상습 투기지역 등 불법투기 단속 및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명절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은 자제하고 있으나, 차박·캠핑 등 소규모 가족 단위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대응 필요

**2 주요 추진내용**

- 추진기간 및 참여기관
  - (추진기간) ‘22. 9. 5.(월) ~ 9. 16.(금), 12일간
  - (참여기관) 환경부(총괄),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등
- 중점 추진사항
  - (특별수거체계) 생활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 구축·추진
    - 연휴기간 특별수거일 지정, 수거일정 조정\* 및 사전 안내(주민 대상)
    - \* 연휴기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분산 배출되도록 운영

-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 재활용폐기물 처리량 증가 대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 조치 방안 마련
  -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시설 여유 보관량 확보 및 과다 발생 대비 임시보관장 마련 등 조치
  - 제지사·원료업계의 폐지재고 심화, 추석연휴 폐지 급증 등을 대비하여 공공비축시설을 이용한 폐지 비축 추진(1만톤 이상)
    - \* 제지사에서 폐지 선매입, 정부에서 운반·상하차비 50% 지원 등
  - 연휴 기간 전·후 재활용폐기물 수거 상황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 폐기물 선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 (불법투기 제도·단속)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및 휴게소 등 무단 투기행위 제도·단속
  -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과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및 다중이용시설(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 지역 등) 불법투기 제도·단속 강화
    - ※ 다중이용시설 대상 재활용폐기물의 분리보관·재활용기준 이행 및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 불법투기 사전예방
  -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 강화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마스크는 되가져가도록 유도 및 버릴 때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도록 안내

<참고> 폐마스크의 경우에는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가정으로 가져가서 종량제봉투로 배출 요망 (소각처리 됨)

- 추석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저감 도모
  - ※ 과대포장 위반의심 제품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검사 및 결과 제출하도록 검사명령

- (분리배출 홍보) 명절 다량 발생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홍보
  - 추석 연휴에 많이 나오는 폐기물(선물세트류, 투명페트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유리병류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 카드뉴스,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한국폐기물협회)
  - 지자체 대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사례집 배포
  - 고속도로 휴게소·공원 등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활용, 투명페트병 반납시 포인트·상품 등을 제공하는 수거보상제 등 안내

- 첨부 1.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1부.  
 2. 추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포스터 1부.  
 3.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부.

**첨부 1**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모형	명칭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투명페트병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에 배출
	종이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박스와 구분하여 골판지류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훑날리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품(스티로폼)으로 배출
	플라스틱 포장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비닐 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훑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양파망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류로 분리배출

모형	명칭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p>과일 포장재 (꽃모양 받침)</p>	<p>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p>
	<p>식용유</p>	<p>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p>
	<p>남은 음식물</p>	<p>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단,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p>
	<p>부직포 장바구니, 보자기</p>	<p>부직포 및 보자기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p>
	<p>아이스팩</p>	<p>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하며,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 재사용 수거함에 배출</p>
	<p>알루미늄 호일</p>	<p>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조각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p>
	<p>비닐 랩</p>	<p>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p>



올 추석 음식은 알맞게 딱 먹을만큼만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첨부 3**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b>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b>	
<b>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b>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b>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b>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b>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b>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